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19.9.27.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 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 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삼다이음콜센터(064-780-3300)**를 통해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은 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자격조건 및 임대조건 등 세부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4.09.05.(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은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미적용하여 공급합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9.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계층은 무주택자)으로서 소득·자산 기준 및 계층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합니다.
- (모집주택 및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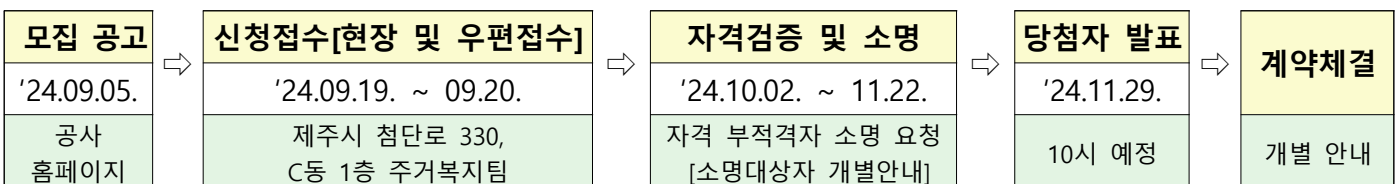
주택	소재지	계층	모집인원
함덕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642	청년	14명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명
한림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42-5	청년	3명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명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공급방법) 모집지역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순번에 따라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공급특성) 금회 공고는 보수 중인 세대, 향후 입주자 퇴거 등으로 인해 발생할 공실을 고려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주택 개보수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12개월 간 유지**되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유의사항)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기재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를 진행하므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기 바라며, 오기나 변경 등의 사유를 공사에 알리지 않아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공급개요

### ■ 모집일정



## ■ 공급대상 주택

주택	계층	공급호수	입주 가능호수
함덕	청년	30호	3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8호	2호
한림	청년	8호	1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6호	1호

### •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 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 및 입주 가능호수는 주택 매입, 계약자 퇴거, 예비입주자 계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별 공급유형이 구분되어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및 주택 구조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 접수 시 **공급유형의 구분없이 통합 모집**하며 주택의 동·호는 공급이 가능한 주택을 배정합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입주 전 주택 개보수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계층 : 2년 계약, 재계약 2회 가능(자격 충족 시 <b>최장 6년</b> 거주)</li> <li>•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가 없는 경우 : 2년 계약, 재계약 2회 가능(자격 충족 시 <b>최장 6년</b> 거주)</li> <li>- 자녀가 있는 경우 : 2년 계약, 재계약 4회 가능(자격 충족 시 <b>최장 10년</b> 거주)</li> </ul> </li> </ul>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60 ~ 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공급계층에 따라 차등			
	구분	소득이 있는 청년	소득이 없는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68%	시중 시세의 72%	시중 시세의 80%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표준임대보증금의 약 50%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지원합니다. (희망자에 한함)</b></li> <li>※ <b>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시 표준임대보증금의 감액 전환은 불가하며,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표준임대보증금의 증액 및 감액 전환도 가능합니다.</b></li> <li>• 전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액 시 표준임대보증금의 50% 범위 내(전환율 <b>6% 적용</b>)</li> <li>- 감액 시 전환 후 월임대료의 20개월분 금액을 초과한 범위 내(전환율 <b>2.5% 적용</b>)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 사항으로서 <b>100만원 단위로 전환</b> 가능합니다.]</li> </ul> </li> <li>※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li> </ul>			

※ 첨부된 주택 내역의 임대조건은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공실이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청년 계층”은 소득 유·무에 따라 임대 조건이 달라지며, 임대 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 조건을 적용합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율, 전환 기준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공용 전기·수도 요금, 승강기·소방·전기 안전 관리비, 공용부 청소·방역·예초, 관리사무소 운영비(인건비 등) 등의 비용은 관련법에 따라 관리비로 계상되어 청구됩니다.

## 2 신청자격 및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인 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과거나 현재 행복주택 입주 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합산 거주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자격 조사 결과의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2-1. 청년 계층

모집 공고일(2024.09.05.)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⑦와 ②~⑤를 충족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④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 ①-⑦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1984.09.06. ~ 2005.09.05.)
- ①-④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2) 퇴직 후 1년 이내이며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해당 세대(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 신청자 1인 기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	'24.3.28. 이후 출생 자녀가 1인	'24.3.28.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며, 자녀가 2명 이상
1인	4,179,557원 이하	-	-
2인	5,957,283원 이하	6,498,854원 이하	-
3인	7,198,649원 이하	7,918,514원 이하	8,638,379원 이하
4인	8,248,467원 이하	9,073,314원 이하	9,898,160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9,652,578원 이하	10,530,085원 이하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임
- ※ 6인 이상의 가구는 5인 가구 소득기준에 추가 1인당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기준 완화

④ 해당 세대(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 기준)의 총 자산가액이 27,300만원 이하이고 총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구분	미성년자녀	총 자산가액 기준	자동차가액 기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	3억원 이하	4,079만원 이하
	2명이상	3억2,800만원 이하	4,450만원 이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명이상	3억2,800만원 이하	4,450만원 이하
그 밖의 경우	-	2억7,300만원 이하	3,708만원 이하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 및 자동차가액 기준 완화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 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①-④ 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①-④ 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청년 계층'의 해당 세대

구분(신청자 기준)	해당 세대	비고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li> <li>• 신청자의 직계존속</li> <li>• 신청자의 직계비속</li> <li>•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li> </ul>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li> </ul>	

### ■ 신청순위

1순위	제주특별자치도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 선정기준

신청순위별로 우선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경합이 있으면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입주자 선정 방법	신청순위 ⇨ 추첨
-----------	-----------

## 2-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모집 공고일(2024.09.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㉓와 ②~⑤, 예비신혼부부는 ①-㉔와 ③~⑥, 한부모가족은 ①-㉕와 ③~⑤)을 모두 갖춘 자

①-㉓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①-㉔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㉕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2017.09.06. 이후 출생자)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 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7.09.05. ~ 2024.09.05.)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맞벌이가 아닌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	'24.3.28. 이후 출생 자녀가 1인	'24.3.28.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며, 자녀가 2명 이상
2인	5,957,283원 이하	6,498,854원 이하	-
3인	7,198,649원 이하	7,918,514원 이하	8,638,379원 이하
4인	8,248,467원 이하	9,073,314원 이하	9,898,160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9,652,578원 이하	10,530,085원 이하

▪ 맞벌이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	'24.3.28. 이후 출생 자녀가 1인	'24.3.28.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며, 자녀가 2명 이상
2인	7,040,426원 이하	7,581,997원 이하	-
3인	8,638,379원 이하	9,358,244원 이하	10,078,109원 이하
4인	9,898,160원 이하	10,723,007원 이하	11,547,854원 이하
5인	10,530,085원 이하	11,407,592원 이하	12,285,099원 이하

※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임

※ 6인 이상의 가구는 5인 가구 소득기준에 추가 1인당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기준 완화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6,100만원 이하이고 총자산 중 자동차 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구분	미성년자녀	총 자산가액 기준	자동차가액 기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	3억8,000만원 이하	4,079만원 이하
	2명이상	4억1,400만원 이하	4,450만원 이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명이상	4억1,400만원 이하	4,450만원 이하
그 밖의 경우	-	3억4,500만원 이하	3,708만원 이하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 및 자동차가액 기준 완화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중복신청 시 무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예비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의 해당 세대

해당 세대	비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된 배우자(이하 '분리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신청순위

1순위	제주특별자치도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순위는 신청자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기준으로 적용함(한부모가족은 본인 기준)

■ 선정기준

신청순위별로 우선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경합이 있으면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입주자 선정 방법	신청순위 ⇨ 추첨
-----------	-----------

## 3

##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신청 접수 [현장 또는 등기우편]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당첨자 발표	계약 및 입주
<p>[접수 방법] 현장 또는 등기우편 접수</p> <p>[접수 기간] 2024.09.19.(목) ~ 09.20.(금) - 현장 접수시간 10:00~ 17: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등기우편은 20일 소인 분까지 접수</p> <p>[접수처]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주거복지팀</p>	<p>[발표일] 2024.11.29.(금) 10시 예정</p> <p>[발표 방법]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 게시 (<a href="http://www.jpdc.co.kr">www.jpdc.co.kr</a>) [정보공개→공사소식→공지사항]</p>	<p>개별 안내</p>

- 현장 접수 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또는 대리인) [생년월일만 기재된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구 분	구비 서류
본인이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에 필요한 서류(신청자 신분 확인서류 및 청약신청 구비서류)를 모두 구비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기우편 발송 시 주소 오기입 등으로 인한 미송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명시한 기간이 경과한 우체국 소인분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해당 세대는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공고일(2024.09.05.)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 제출 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b>【필수】</b> 본인 확인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사본 제출</li> <li>※ 여권의 경우 생년월일만 기재 시 여권정보증명서 첨부시 인정</li> <li>※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li> </ul>	
<b>【필수】</b> 공급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주택, 신청인 정보 등 해당 내용 전부 기재</li> <li>※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산정기준 등) 기준 및 기재항목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ul>	
<b>【필수】</b>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가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li> <li>-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 및 해당 세대 모두 작성</li> </ul> </li> <li>• 신혼부부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해당 세대 모두 작성</li> <li>-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해 작성</li> </ul> </li> </ul>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b>【필수】</b>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세대 전원이 정자서명 또는 날인</li> <li>-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li> <li>•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li> </ul>	
<b>【필수】</b>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li> </ul>	
<b>【필수】</b>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성방법) 공고 시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li> </ul>	
<b>【필수】</b>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li> <li>•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li> <li>•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li> <li>• 모집 공고일 이후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li> </ul>	행정복지센터
<b>【필수】</b>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li> <li>•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li> <li>•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거소) 사실 증명서 추가 제출</li> </ul>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모집 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li> <li>※ 반드시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li> </ul>	행정복지센터
[해당자만 제출] 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받으려는 경우</li> </ul>	
[해당자만 제출] 외국인등록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li> </ul>	
[해당자만 제출] 임신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거나,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받으려는 경우</li> <li>※ 모집 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li> </ul>	

■ 입주자격별 제출 서류

입주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청년 계층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li> <li>※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li> <li>※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li> <li>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li> <li>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li> <li>※ 현재 미가입자는 입주 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li> </ul>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 초년생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해당자만 제출	<p>[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li> <li>※ 해당 서류로 직장 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추가제출 (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li> </ul> <p>[소득활동 중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지역가입자 등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등명</li> <li>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li> </ul> <p>[업무 종사기간이 5년을 초과한 자 중 기간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 고등학교 재학 중 업무에 종사한 경우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li> <li>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연구기관,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경우</li> <li>- 확인서(복무 중인 경우) 또는 병적증명서(복무완료인 경우)</li> </ul>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 (세무서)  해당 학교

입주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신혼부부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li> <li>※ 현재 미가입자는 입주 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li> </ul>	행정복지센터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li> </ul>	
	예비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li> <li>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li> <li>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li> <li>※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li> <li>-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li> <li>-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와 배우자가 등본 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각 제출)</li> </ul>	
	계층	<p>[본인,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li> <li>※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li> <li>※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li> <li>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li> <li>소득활동 중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지역가입자 등인 경우 추가 제출</li> <li>-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li> <li>-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li> <li>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하는 경우 추가 제출</li> <li>-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li> <li>※ 해당 서류로 직장 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추가제출 (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li> </ul>	

■ 추가 제출서류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하단 서류 추가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신생아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산) 계약일에 출생증명서(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 자녀가 등재 되어있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li> </ul>	등록기준지 관할법원, 행정복지센터,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 입주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제출</li> </ul>	행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 중) 입주신청 시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제출</li> </ul>	병원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 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관련 항목	유의 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p>■ <b>입주 자격별 최대거주기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li> </ul> <table border="1" data-bbox="288 450 1473 600"> <thead> <tr> <th>입주 자격</th> <th>최대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청년 계층</td> <td>6년</td> </tr> <tr> <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 <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 조건으로 새로 계약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li> </ul> <p>■ <b>재청약 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복주택의 입주자는 <b>동일한 입주 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b>,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b>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b></li> <li>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 주택 및 지역 전략 지원 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li> </ul>	입주 자격	최대거주기간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입주 자격	최대거주기간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예비입주자	<p>■ <b>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 자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대상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실이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대상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li> </ul>														
재계약 등	<p>■ <b>재계약 자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입주 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재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li> <li>※ 단, 아래 경우는 제외하나 공급 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계층의 경우 19세 이상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li> <li>-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신청자의 혼인 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li> </ul> </li> </ul> <p>■ <b>재계약 시 임대 조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재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li> <li>거주 중 <b>소득 기준을 초과</b>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b>아래의 할증 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b>됩니다.</li> </ul> <table border="1" data-bbox="300 1742 1473 1989"> <thead> <tr> <th rowspan="2">소득 기준 초과 비율</th> <th colspan="2">할증 비율</th> </tr> <tr> <th>최초 재계약 시</th> <th>2회차 이상 재계약 시</th> </tr> </thead> <tbody> <tr> <td>10% 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10% 초과 30% 이하</td> <td>120%</td> <td>130%</td> </tr> <tr> <td>30% 초과</td> <td>130%</td> <td>14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재계약 시 임대 조건은 별도 재계약 안내에 따릅니다.</li> </ul>	소득 기준 초과 비율	할증 비율		최초 재계약 시	2회차 이상 재계약 시	10% 이하	110%	120%	10% 초과 30% 이하	120%	130%	30% 초과	130%	140%
소득 기준 초과 비율	할증 비율														
	최초 재계약 시	2회차 이상 재계약 시													
10% 이하	110%	120%													
10% 초과 30% 이하	120%	130%													
30% 초과	130%	140%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모집 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청년 계층은 무주택자)</li> <li>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에 따릅니다.</li> <li>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 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재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li> </ul>
중복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b>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b>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b>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b></li> <li>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b>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b></li> <li><b>※ 단, 배우자의 세대 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b></li> </ul>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 서류는 모집 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li> <li><b>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b></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li> </ul>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li> </ul>
지구 및 단지 특성	<p><b>■ 지구 및 단지 특성</b></p> <p><b>① 공통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세대 급수용 저장탱크는 기계실에 급수 펌프와 같이 설치되고 복도(급수계량기 매립형)를 통해 세대별로 급수됩니다.</li> <li>각 세대별로 주방가구가 설치되며, 가스쿡탑은 건전지 타입입니다.(싱크대, 가스쿡탑 2 또는 3구형)</li> <li>각 세대 주방가구 싱크대 안에 자동온수 분배기(원룸형 제외)가 설치됩니다.</li> <li>각 세대 욕실에는 대변기(2피스형), 세면기(비누받침대 포함), 휴지 및 수건걸이, 샤워기, 샤워칸막이(일부 세대 제외)가 설치됩니다.</li> <li>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에 의거 절수형 설비가 설치됩니다.</li> <li>각 세대에 설치된 월패드를 통해 출입문 및 세대 내 전등, 난방, 가스 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인근에 LPG가스저장소가 설치되고, 복도 가스배관을 통해 각 세대로 가스를 공급합니다.</li> </ul> <p><b>② 마음에온 함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단지는 48세대로, 단지 전체 주차대수는 49대(장애인 2대, 경차 3대 포함)이며, 지상·지하주차장입니다.</li> <li>본 단지는 101동, 102동 2개동으로 구성되며, 동 사이에 중앙마당이 있습니다.</li> <li>본 단지의 보행자 주 출입구는 북측, 각 동 부출입구는 동서측에 위치합니다.</li> <li>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는 북측(101동 부근), 지상주차장 출입구는 102동의 서쪽에 위치합니다.</li> <li>102동 1층에 무인택배 보관소가 설치됩니다.</li> <li>각 동 지상 3층에 다목적주민시설, 지상 2층에 세탁실, 지상주차장 인근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습니다.</li> <li>세대 태양광 발전 패널이 건물 후면에 부착되어 세대전기료가 일정 부분 절감됩니다.</li> </ul>

### ③ 마음에온 한림

- 본 단지는 16세대로, 단지 전체 주차대수는 15대(장애인 1대, 경차 1대 포함)이며 지상주차장입니다.
- 본 단지의 보행자 주 출입구는 건물 1층 중앙에 위치합니다.
- 1층 주 출입구에 무인택배 보관소가 설치됩니다.
- 지상 2층에 다목적주민시설이 있습니다.
- 보일러는 발코니에 설치되고, 세탁기/실외기(가스배관은 매립형) 등은 별도로 설치 가능합니다.

### ■ 사생활권 및 환경권

#### ① 공통사항

- 단지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입주민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민 커뮤니티시설이 설치됩니다.
- 단지 내 공공장소(필로티, 휴게공간 등) 및 부대시설 설치로 인근 세대는 생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설계 배치 상 기계전기 급배기구, 스크린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 상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 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불빛의 반사,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층부 등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 및 오전 일조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계실, 전기실 등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DRY AREA)이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법용 CCTV는 승강기 내부, 단지 출입구, 단지 비상도로 및 1층 주 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감시 취약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장소에 설치된 CCTV용 카메라 설비는 설치 위치, 환경에 따라 야간 화질이 주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동 평면 형태에 따라 인접세대 간 프라이버시 침해 및 동일층 내 호별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② 마음에온 한림

- 인근 주택의 사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는 남측면 방에는 창에 차폐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니,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계실, 서버실이 2층 세대와 인접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이사 및 설치

#### ① 공통사항

- 세대 내 별도의 에어컨 설치 시 지정된 장소에 실외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한 구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 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 부담이며, 퇴거 시 시설물은 원상 복구를 해야 합니다.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마음에온 함덕

- 건물 후면부 세대 태양광발전 패널 설치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이 제한됩니다.
- 에어컨 설치를 위해 세대별 벽체에 타공을 해야하며, 설치 시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퇴거 시에는 에어컨 설치 부위는 입주자가 설치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 ③ 마음에온 한림

- 에어컨 설치를 위해 세대별 벽체에 매립된 에어컨 배관을 사용해야 합니다.

### ■ 단열 및 환기

- 습도가 높은 날 창을 열어두거나, 동절기 등 실내외 온도차가 큰 시기에 가습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 빨래 건조 등으로 습도가 높은 실내 환경이 조성될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실내 환기 등을 통한 결로 발생 예방이 필요합니다.
- 돌출발코니 적용 세대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안전

- 옥상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되므로 입주자 안전을 위해 재난 시 외에는 출입을 금합니다.
- 각 세대 주방가구 상판 안에 자동화 소화기가 설치되고, 보일러 위에는 확산 소화기가 설치됩니다.(감지 센서 포함)
- 각 세대에 화재 예방용 소화기(ABC용) 1개가 비치 되고, 3층 이상 세대는 거실 또는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됩니다.
- 공용부위(복도, 승강기 등)에 물건 적치는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대상이 됩니다.
- 세대 돌출발코니에 장기간 적치물을 두는 것은 금지됩니다.

### ■ 관리비

- 공용부 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공용 전기·수도 요금, 승강기·소방·전기 안전 관리비, 공용부 청소·방역·예초, 관리사무소 운영비(인건비 등) 등의 비용은 관련법에 따라 관리비로 계상되어 청구됩니다.
- 입주 시 해당 호실에 대해 입주자가 사용신고(세대 전기\_한전 명의변경 / 세대 가스\_주택별 공급사)를 해야 하며, 퇴거 시 전기, 수도 및 관리비는 보증금에서 정산됩니다.
- 입주, 퇴거, 누수 등 전용부 점검이 필요할 시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이 전용부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 기타

-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습니다.
- 각 단위세대 타입별 실별치수는 시공오차 범위 내 증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별가구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주방 상부장이 꺾이는 일부 평형("ㄱ"형 또는 "ㄷ"형)은 문짝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은 각 타입별 차이에 따라 형태가 다릅니다.
- 입주 전,후 주민등록법에 의거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전입신고를 마치시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원본제출)

## 6 주택 성능 등급 및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 성능 등급 및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 성능 등급 : 1,000세대 미만으로 의무 인증 대상이 아님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구분	내용	적용 여부	구분	내용	적용 여부
건축 부분	단열 조치 준수	적용	기계 부분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 펌프	해당 없음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절수형 설비 설치	적용
	방습층 설치	적용	전기 부분	수변전설비 설치	해당 없음
기계 부분	설계용 외기 조건 준수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해당 없음		조명설치	적용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	해당 없음		대기 전력 자동차 단장치 설치	적용
	고효율 전동기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 점멸스위치	미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 7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주택명	사업 주체 및 감리	주택 주소	시공업체
마음에온 함덕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642	한일종합건설(주)
마음에온 한림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42-5	삼우종합건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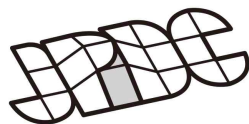
<b>문의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이음 콜센터 (064-780-3300)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li> </ul>
<b>현장, 우편 접수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주거복지팀</li> </ul>

-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의거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알고 계신 부조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http://www.jpdc.co.kr>), ☎ 064-755-3119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자발적 청렴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깨끗한 조직풍토 조성 및 제주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사 임직원은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과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이나 편의제공 등을 하지도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 중 부패행위를 확인하셨거나 비위행위를 알고 계신 경우 공사 홈페이지 ([www.jpdc.co.kr](http://www.jpdc.co.kr)) 부패·공익신고에 의견을 주시면 원칙과 규정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024. 09. 0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velopment Corp.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 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주택의 범위**

- 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②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일**

- ①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② **분양권등의 경우**

-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의 공급계약체결일
- 2.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3. (분양권등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총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 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 요약

구분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에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 상세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li> <li>•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li> <li>•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li> <li>•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li> </ul> <p>*「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p>
총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li> <li>*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li> <li>•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li>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li> </ul> </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ul> </li> </ul>

구분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li>•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li> </ul>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li> <li>•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li> <li>•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li> <li>•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li> <li>•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li>•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li> </ul>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li> <li>•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li> <li>•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li> </ul>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li> <li>• 공공기관 대출금</li> <li>•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li> <li>•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li> <li>•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b>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b></li> <li>•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b>비영업용 승용자동차</b>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b>높은 차량가액</b>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li>•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li> </ul>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 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 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 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 지원금은 제외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자산	일반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li> <li>-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li> <li>-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 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li> <li>-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li> </ul>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국토부 주택전산망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4」,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